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현행 조례는 입학지원자의 책임이 없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
과오납의 경우에만 입학선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
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실제 입학전형 과정에서는 천재지변, 질병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조례에 반환 근거가 없어 지원자와 학부모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입학선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 안 제3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,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납입된 선발수수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